

무배당 메리츠 꿈사랑보험0812 상품요약서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며,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중요사항에 대한 Q&A]

1. 이 상품의 보험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이 상품은 질병 및 상해보장을 포함한 상품으로 피보험자 나이에 의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보험가입자격제한 중 피보험자 가입가능 나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상품의 중도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회사는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한 시점의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5%해당액을 미래설계자금(중도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1) 보험가입자격제한

○ 피보험자 가입가능나이

무배당 메리츠 꿈사랑보험0812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가입나이	보험료납입주기
기본계약 [※]	3년	일시납	0세~13세	일시납
부양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부양자 질병사망			20세~76세	

주) 기본계약 : 일반상해후유장해, 일반상해입원일당(4일 이상), 질병입원일당(4일 이상)

○ 보험나이의 계산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상품의 특이사항

① 예정이율 : 연 4.25% 복리

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 1-(1) 피보험자 가입가능나이 항목의 표 참조

③ 미래설계자금(중도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미래설계자금 (중도환급금)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시점의 계약해당일에 계약이 유효한 경우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5%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시점의 계약해당일에 계약이 유효한 경우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5%
만기환급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 계약이 유효한 경우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5%

④ 피보험자 및 계약자에 관한 사항

가. 피보험자의 정의

- 기본계약의 피보험자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에 의한 소액보험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합니다.
- 부양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부양자 질병사망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기본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상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직계존속 중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자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나. 계약자의 정의

- 이 계약의 계약자는 각 개별 계약자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공동 계약자로 합니다.

다. 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단,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피보험자 및 계약자 전원의 요청,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⑤ 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의 세부 절차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소액보험사업의 지원대상자에게 계약자의 권리를 위임받아 이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⑥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의 주체

- 이 계약의 보험료는 소액보험사업의 특성상, 보험료의 일부를 수혜대상자가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를 휴면예금관리재단이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1.-(2)-⑤ 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별계약자의 원리를 위임받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일괄납입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나. 보험료 납입의 특이사항

- 이 계약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제5항 다목에서 정한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복지사업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부양자 특별약관”중 상해금수별로 적용하는 담보는 부양자 직업에 상관없이 단일률을 적용합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 계약	일반상해 후유장해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80%이상 후유장해시 지급	가입금액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80%미만 후유장해시 지급	가입금액 X지급률
	일반상해 입원일당 (4일 이상)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1일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하여 지급	1일당 가입금액 (4일 이상)
	질병입원 일당 (4일 이상)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1일당 최초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하여 지급	1일당 가입금액 (4일 이상)
선택 계약	부양자 일반상해 사망 후유장해	부양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지급	가입금액
		부양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80%미만 후유장해시 지급	가입금액 X지급률
	부양자 질병사망	부양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지급	가입금액

(2)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회사는 피보험자(기본계약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합계액과 이미 납입한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 보험료 합계액(미래설계자금(중도환급금)이 있었던 경우 그 원리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중 큰 금액을 공동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1.-(2)-⑤ 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별 계약자의 권리를 위임받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일괄 지급받는 것으로 합니다.
- 부양자 질병사망 특별약관은 부양자 일반상해사망후 유장해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회사의 보장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분석표

(1) 가입조건

- 남자, 10세, 상해1급, 3년만기 일시납
- 일반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일반상해입원일당(4일 이상) 2만원, 질병입원일당(4일 이상) 2만원, 미래설계자금(중도환급금) 50만원, 만기환급금 50만원

(2) 보험료 예시

구분	보장명	보험 가입금액	영업보험료
기본 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1,491,890원
	미래설계자금(중도환급금)	50만원	
	만기환급금	50만원	34,596원
	일반상해입원일당(4일 이상)	2만원	
	질병입원일당(4일 이상)	2만원	8,288원
총보험료			1,534,774원

4. 보험료 산출기초

(1)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그리고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2) 예정이율

예정이율이란?

회사는 장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금리확정형 보험상품과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차이점

- 금리확정형 : 보험회사가 보험료산출시 정한 확정금리를 예정이율로 적용하는 보험
- 금리연동형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이 변동되는 보험

- 이 상품의 예정이율은 연복리 4.25%입니다.

(3) 예정위험률

예정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예측한 것을 예정위험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높아지고 낮아지면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기준 : 기본계약, 남자, 10세, 상해1급)

보장위험	예정위험률
일반상해 후유장해 발생률(80%이상)	0.000057
일반상해 후유장해 지급률(80%미만)	0.000178
일반상해 임시생활비(4일이상)	0.570483
질병입원율(4일이상 180일한도)	0.141212

(4) 예정사업비율

예정사업비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사업비율이라 합니다.

[예정사업비지수 예시]

(기준 : 남자, 상해1급)

구 분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사업비계
예정사업비지수	100.0	100.0	-	100.0

이 보험의 예정사업비지수는 업계 전체 상품의 평균 예정사업비율과 비교한 수치이며, 업계평균 사업비율 산출기준일은 2008년 4월 1일입니다.

예정사업비지수란?
손해보험협회에서 매년 산출한 업계의 평균사업비 규모(사업비 항목별 업계평균을 100으로 설정)와 비교한 지수입니다. 이러한 예정사업비지수는 실제 귀하께서 가입하신 상품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및 납입보험료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표

○ 가입조건
- 남자, 10세, 상해1급, 3년만기 일시납 1,534,774원
- 일반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일반상해입원일당(4일이상) 2만원,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2만원, 미래설계자금(중도환급금) 50만원, 만기환급금 50만원

○ 예시표 (단위 : 원)

구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금	환급률
1년	1,534,774	1,471,156	95.8%
2년	1,534,774	995,670	64.8%
3년	1,534,774	500,000	32.5%

주) 상기 해약환급금은 보험기간 동안 지급되는 미래설계자금(중도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3)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써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